지방세 전출

1 기본현황

□ 사업개요

회 계	일반회계	
사업기간	☑연례반복	
사업내용	○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라 . 전출하여 「교육비특별회계」의 안정적 균형있는 발전 도모	
사업비	1,267,921,937천원 (국비)	(시비)1,267,921,937천원
(당해년도)	기타 (예산 외) 〔구비〕	(기타)

□ 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평생교육국	교육정책과	이방일	권명희	박은지
		2133-3910	2133-3912	2133-3917

[※]실국 및 부서명은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2 예 산 설 명

□ 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	2018예산액 (A)	2019예산액 (B)	증감 (B-A)	
一	2016에전역 (A)	2019에산력 (B)	○名 (D-A)	(B-A)*100/A
계	(x ⁻)	(x-)	(x-)	(x-)
	1,442,111,611	1,267,921,937	Δ174,189,674	△12
법정전출금	(x-)	(x-)	(x-)	(x-)
	1,442,111,611	1,267,921,937	△174,189,674	△12

□ 산출근거

과목구분		2019년 예산내역		
법정전출금	○ 지방세 전출		=	1,267,921,937천

과목구분	2019년 예산내역	
	1,267,921,936,400원	원

3 사업설명

□ 사업목적

○ 교육·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를 관련법령에 따라 교육청에 지원함으로써 서울교육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

□ 사업근거

-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
-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

□ 사업내용

○ 지원대상 : 서울특별시교육청

○ 사업기간 : 2019년 1 ~12월

○ 사업내용 : 지방세 시세총액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

- ①취득세 ②주민세(균등분) ③자동차세 ④레저세 ⑤담배소비세

⑥지방소비세 ⑦지방소득세(소득분)

○ 총사업비 : 1,267,921,937천원

□ 추진경위

○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시세입의 10%를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으로 전출

□ 2019년도 추진일정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1,267,921,9 37	
전월세입실적 검토 및 전출대상 금액 산정	2019.01~2019.12		
지방세전출(당월분의 90%)	2019.01~2019.12	1,141,129,7 43	매월 말일까지 전출대상액의 90% 전출
지방세 전출(정산분	2019.04~2019.12	126,792,194	4월 7월, 10월, 12월 정산분 전출

4 사업효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2016년도	○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지방세 전출 1,205,928,432천원
2017년도	○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지방세 전출 1,230,170,237천원
2018년도	○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지방세 전출 1,025,676,000천원('18년 9월말 기준)

□ 향후 기대효과

○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라 교육청에 법정전출금을 전출하여 서울시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

5 최 근 3 년 결 산 현 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최종예산	전년이월	예산변경	예산현액	집행액	차년이월	집행잔액
2015	(x-) 1,008,152,91 3	(x-) 0	(x-)	(x-) 1,008,152,91 3	(x-) 1,008,152,91 3	(x-)	(x-) 0
2016	(x-) 1,205,928,43 2	(x-) 0	(_X -)	(x-) 1,205,928,43 2	(x-) 1,205,928,43 2	(x-)	(x-) 0
2017	(x-) 1,326,787,13 3	(x-) 0	(_X -)	(x-) 1,326,787,13 3	(x-) 1,326,787,13 3	(x-)	(x-) 0